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 삭제 등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17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 삭제 등(안 제33조 및 제86조)	3
2.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전 자체심의 의무 부여(안 제86조)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1.

다.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인정된다는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해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FCC는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에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뉴스 보도 진실성 등은 저널리즘의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86조).

Ⅲ. 검토의견

1.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 삭제(안 제33조 및 제86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법」(이하 “법”) 제33조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 중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

-
- 1)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	第33條(審議規程)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報道・論評의 <u>공정성・공공성</u> 에 관한 사항	10. ----- <u>공공성</u> ----- --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 제33조는 제1항2)에서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2장 일반기준에 “제1절 공정성”³⁾을 두어 제9조 공정성, 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

2)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의 구별,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의 조문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공정성”이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인정된다는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해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
에 공감할 수 있음.

○ 특히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축소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최소 규제의 원칙을 살리려
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 방송법 체계 하에서 공정성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
성)⁴⁾,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⁵⁾, 제32조(방송의 공정성과 공

-
- 4)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
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
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
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
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공성 심의)⁶⁾,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제1항⁷⁾,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제2항⁸⁾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⁹⁾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심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법체계 하에서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안 제33조제2항제10호에서 ‘공정성’ 자구만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32조¹⁰⁾에서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6)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방송법」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체계적 관점에서 타 조문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련부처의 의견으로는, 방통위는 법체계상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심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방송법은 보도의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제6조)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사항(제10조제1항)에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원칙(제69조제1항),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제78조의2제2항)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또한,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내적 다원주의를 채택한 현행법제 하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며, 현행 「방송법」의 다수 조항에서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10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제32조, 제44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8조의2제2항 등), ‘공정성’의 개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49474)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¹¹⁾되어 있으므로, 공정성 심의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제33조제

11)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함.

2항제10호에서 ‘공정성’ 문구만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공정성 심의를 폐기하는 방식 역시 전제 법체계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송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EBS는 수용, TV조선은 일부 수용입장이고, 연합뉴스는 신중 검토 입장임.

- EBS는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과 같은 개념은 학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따르는 현실로,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 ‘방송’을 특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을 축소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최소 규제의 원칙을 살려 사회 규범과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수용 입장임.

- TV조선은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보도의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의 방송평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공정성’ 등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재승인 부관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논란을 줄이고 사업자 규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된 재승인 부관조건도 함께 삭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수용 입장임.

- 연합뉴스는 재승인, 방송평가 등 공정성 관련 심사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종합해보면, 방송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 내용을 제외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 법 다수의 조항에서 공정성이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3조제2항제10호에서만 공정성이 삭제되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방통위, 방심위의 신중 검토 의견 및 개별 방송사업자들의 수용, 일부수용, 신중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전 자체심의 의무 부여 (안 제86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이 되기 전에 자체심의 하도록 하면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도 방송되기 전에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자체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u>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u> 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자체심의) ① ----- ----- ----- <u>방송프로그램이</u>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 제86조제1항은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심의하도록 하면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되기 전에

심의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는 생략하고 제33조(심의규정)에 따라 방심위가 제정·공표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방송심의 대상이 됨.
- 개정안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되기 전에 자체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미국FCC는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에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뉴스 보도 진실성 등은 저널리즘의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방심위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반론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전 자체심의를 의무화할 경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¹²⁾, 개별 방송

12)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사의 여건 등에 따라 보도의 독립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 자체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제작과정에서 내적 자유를 제약하여 오히려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방송사 역시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조항은 보도를 제외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자체심 의하도록 규정, 이는 제작의 신속성이 중요하고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보도 특성상 자체 사전심의를 수행하기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방송사업자조차 방송사 구조나 여건에 따라 보도 자율성 침해가 더 크게 제한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심위 역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권리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를 침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도 민원 제기가 가능하고,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더불어 방송 내용의 다양한 공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별개의 제도라는 점,

현행 제86조제1항에서 자체심의 대상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취지는 긴급성을 요하는 보도프로그램의 특성상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자체심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행 규정하에서도 방송사업자는 스스로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자체심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개정안의 문언대로라면 자율규제라는 개정 취지와 달리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체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임.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도 방송되기 전에 자체심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은 신중 검토 입장임.

- EBS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보도 자율성의 위축을 막고 방송사의 자율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자체심의’ 대상에 보도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각 방송사의 구조나 여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도 자율성이 더 크게 제한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뉴스 및 보도는 제작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비춰볼 때 사전 심의의 어려움이 있는 방송사 현장 운영상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TV조선은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경우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자체심의 규정에 보도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방송사 자율적으로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MBN 역시 보도 프로그램은 생방송이라는 방송의 특성상 방송 전 심의가 불가능하고, 녹화방송이라 하더라도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될 경우 보도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종합해보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되기 전에 자체심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이 같이 의무화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언중위의 정정보도·반론청구와 방송심의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통위, 방심위의 신중 검토 의견 및 보도 프로그램은 특성상 생방송이 많아 방송 전 심의가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신중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
